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1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1월 7일

나. 발의자: 최봉희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66회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최봉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도움으로써 영등포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기준 (안 제3조~제4조)
- 지원신청 및 선정 (안 제5조)
- 지원제외 및 지원금 회수 (안 제6조~제7조)
- 지원대상자 관리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제정 배경 및 취지

- 우리나라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신체기능 저하 및 이동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의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외부활동이 제한될 경우 근력 저하가 가속화되고,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일상적 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노인 복지증진과 건강증진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했으나 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노인의 경우, 신체활동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용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안의 골자인 ‘‘노인’’과 ‘성인용 보행기’의 개념을 명확히 함.
- 안 제3조(지원대상)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 외(A, B) 판정을 받은 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함.
 - 이를 통해 기존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에게 실질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 안 제4조(지원기준)는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1대의 보행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후 5년이 경과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재해·재난 등으로 손실된 경우에는 최대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규정함.

- 이를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면서도 보행기 노후화나 불가피한 손실 상황에 대비한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혜자의 편의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는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제외)는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 제7조(지원회수)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양도한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 안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의 현황과 지원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 이를 통해 보행이 불편한 노인의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
------------	-----

발의연월일: 2025. 11. .

발 의 자: 최봉희·우경란·이성수·정선희

임현호·이규선·차인영 의원(7인)

1. 제안이유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도움으로써 영등포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기준 (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신청 및 선정 (안 제5조)
- 라. 지원제외 및 지원금 회수 (안 제6조~제7조)
- 마. 지원대상자 관리 (안 제8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돋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구에 주소를 둔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 사람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 ②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지원대상자 1명에게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할 수 없는 경우
2. 재해·재난으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회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이 거짓,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사회활동 정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담당자 확인사항	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 [] 혼자 외출 가능 []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 혼자 외출 불가능	
		질환 종류 및 정도	
	경제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그 밖의 사항()	
지원상황	[] 타 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노인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2.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작성방법

1. 사회활동 정도는 ○○ 경로당 주 ○회 방문, 복지관 방문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담당자 확인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주소,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보장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지원금 지급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행복이음을 통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조회 동의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이용

행복이음을 통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제5조제3항 관련)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성인용 보행기 검수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보조 기구 내역	보장구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입일자			
	구입가격			
	청구금액	금 원	자부담	금 원
	구 입 처			
	예금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명세서(원본)
------	---------------------------------------

성인용 보행기 구매확인서

검수품목	성인용 보행기	제품명	제품코드
------	---------	-----	------

위와 같이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m²)